##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33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모경종·진선미·박성준

이준석 · 김문수 · 이원택

김준혁 • 이용선 • 한준호

양부남 · 김병기 · 윤건영

정을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이상 3개 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와 접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송뢰리・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해해상경계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
	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
	상 경계와 접하고 있는(인천광
	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월곳리, 송해면에 위치
	한 송뢰리・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 · 인화리 · 철산
	리・교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해해상경계지역"이
	라 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
	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
	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u>수 있다.</u>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해상경계지역에 주소가 등록
	<u>되어 있는 자</u>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u>자</u>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 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